

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-1697호

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 공청회 개최 공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(2006.10.19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26(2018.7.19.)호로 변경결정 고시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에게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12월 8일

노 원 구 청 장

1. 공청회 개최 목적

상계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에 대한 계획안 설명 및 의견 청취

2.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

가. 일시 : 2022. 12. 26.(월) 14:00

나. 장소 : 상계3,4동 주민센터 5층 수락홀

3. 상계5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의 개요

구 분	명 칭	면 적(m ²)			비 율 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112,378.0	증) 3,586.1	115,964.1	100.0	-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40,471.4	감) 5,931.5	34,539.9	29.8	-
	도 로	21,042.5	증) 936.4	21,978.9	19.0	하천구역 내 4,933.2㎡
	공 원	6,600.0	감) 100.0	6,500.0	5.5	-
	공공공지	9,302.9	감) 6,976.9	2,326.0	2.0	하천구역 저촉구간 제외
	공공청사	340.0	증) 185.0	525.0	0.5	
	사회복지시설	3,186.0	증) 24.0	3,210.0	2.8	
	소 계	71,906.6	감) 3,706.1	68,200.5	58.8	-
획 지	5-1	69,464.6	감) 6,872.1	62,592.5	54.0	공동주택
	5-2	1,165.0	-	1,165.0	1.0	종교시설
	5-3	1,000.0	-	1,000.0	0.9	종교시설
	5-4	277.0	-	277.0	0.2	종교시설
	5-5	-	증) 3,166.0	3,166.0	2.7	버스차고지
	기타(하천구역)	-	증) 13,223.7	13,223.7	11.4	-

*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은 공청회,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4. 기타 안내사항 및 문의처

가.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실 분께서는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5일전까지 서면(우편, 팩스)으로 “선정발표자 신청서” (노원구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)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선정발표자 신청주소 및 팩스번호

- 주 소 :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(도시재생과)
- 팩스번호 : 02-2116-4635

나.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발표인을 3인 이내로 선정합니다

다. 수인이 작성한 “선정발표자 신청서” 는 대표자 1인이 선정되어 발표할 수 있도록 신청서에 대표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라. 발표자는 공청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하고,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사회자의 진행 식순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

마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도시재생과(☎02-2116-3927)로 문의하시시기 바랍니다.